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9. 8. 20

나. 제출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9. 8. 20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3회 부천시의회(임사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1999. 10. 9) 상정 보류
- 제81회 부천시의회(임사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00. 10. 1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개정이유

- 현행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진흥발전의 토대 구축
-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재적립 범위를 확대

주요골자

-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을 2009년까지 80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조제3항)
-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에 걸쳐 매년 5억원씩 50억원을 추가 출연하는 출연금의 범위를 확대

3. 질의답변 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조성된 기금은 얼마인가 ○ 본 문화예술발전기금 사용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가 ○ 문화예술발전기금심의위원회에서 문화예술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결정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억원임 ○ 심의하여 결정함 ○ 그러함

○ 발전기금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하는가?	○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고 있음
○ 80억원은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충분하다고 보는가?	○ 개정안 제출 당시에는 80억원으로 판단되었으나 지금은 너무 많다고 판단되므로 50억원으로 수정 제안함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문화수요가 많아져 현 30억원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문화예술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금 증액은 필요함

나. 반대토론

- 일반회계에서도 지원하므로 중복지급 등 기금운용의 난맥문제 등이 있으므로 증액해서는 곤란함
- 연간 5억원의 일반회계에서의 출연은 너무 과다하여 재정에 부담을 주며 그만큼 시민의 부담으로 이어짐

5. 수정안의 요지

- 별첨 참조

6. 심사결과

- 수정의결

7. 소수의견 요지

-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기금 증액은 필요하나 50억원은 너무 많고 다른 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20억원으로 감액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관련 제204호
의결년월일	2000. 10. 20 (제81회)

제출년월일 : 2000. 10. 19

제 출 자 : 행정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현재 30억원 규모의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을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간 50억원을 추가 조성하여 기금 총액을 80억원으로 하려는 것은,

-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이 필요하지만 재정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1년에 5억원씩 10년 간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재정적 부담이 너무 많으며 또한 다른 기금과의 형평성의 문제 등이 있음
- 따라서 총 80억원 규모를 삭감하여 50억원으로 하며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간 20억원을 추가 조성하는 것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안 제2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출연기간 조정
 - 2000년부터 2009년까지 → 2001년부터 2010년까지
- 안 제2조제3항의 출연금액 조정
 - 5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총 80억원을 출연 → 2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총 50억원을 출연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증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증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은 1999년까지 출연한 출연금 이외에 2001년부터 2010년까지 2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총 50억원을 출연하고 연 출연금은 연도별 균등하게 출연한다. 단, 연 출연액을 증액하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기금의 조성) ①~②(생략)	제2조(기금의 조성) ①~②(현행과 같음)	제2조(기금의 조성) ①~②(개정안과 같음)
③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년간 부천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30억원을 출연한다. 연 출연금은 연도별 균등하게 출연한다. 단, 연 출연액을 증액하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은 1999년까지 출연한 출연금 이외에 2000년부터 2009년까지 5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총 80억원을 출연하고, 연 출연금은 연도별 균등하게 출연한다. 단, 연 출연액을 증액하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은 1999년까지 출연한 출연금 이외에 2001년부터 2010년까지 2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총 50억원을 출연하고, 연 출연금은 연도별 균등하게 출연한다. 단, 연 출연액을 증액하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4호
의결년월일	2000. 10. 20 (제81회)

제출년월일 : 99. 8. 20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개정이유

- 현행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진흥발전의 토대 구축
-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재적립 범위를 확대

□ 주요골자

-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을 2009년까지 80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조제3항)
-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에 걸쳐 매년 5억원씩 50억원을 추가 출연하는 출연금의 범위를 확대

[수정안 포함]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년 간 부천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30억원을 출연한다.”를 “1999년까지 출연한 출연금 이외에 2001년부터 2010년까지 2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총 50억원을 출연하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금의 조성) ①~②(생략) ③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년 간 부천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30억원을 출연한다. 연 출연금은 연도별 균등하게 출연한다. 단, 연 출연액을 증액하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②(현행과 같음) ③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은 1999년까지 출연한 출연금 이외에 2001년부터 2010년까지 2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총 50억원을 출연하고, 연 출연금은 연도별 균등하게 출연한다. 단, 연 출연액을 증액하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